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01242(본소), 2022나2001259(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01242(본소), 2022나200125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17가합51631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김준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 이은노

변론 종결2023. 1. 19.

판결 선고2023. 2. 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17가합516310(본소), 56450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5,89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23. 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293,414,722원 및 그중 758,087,74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460,526,982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7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91,846,5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3,414,722원 및 그중 758,087,74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460,526,982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7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491,846,5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중단의 표 안 5행의 "1/1,000%"를 "1/1,0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하단의 표 안 5행의 "3/1,000%"를 "3/1,00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표 아래 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63(본소), 2025470(반소)호]은 피고 및 C의 각 채권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상계 후 반소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제1심의 인용액인 1,017,971,120원보다 적게 인용되었다)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제기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결국 이 사건 원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862,153,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	2,176,675,549원	
추가공사대금	876,529,434원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640,338,680원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275,020,000원	

- 제1심판결 10쪽 21행부터 11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2015. 12. 17.) 이후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기계설비 등의 수정도면을 2016. 4.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수차례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0, 53, 58,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피고는 E과의 설계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제조소의 기계설비 준공도면 작성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2015. 12. 17.) 및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 승인(2016. 11. 13.) 이후인 2017. 1. 6. 체결된 것이고, 용역대금이 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며, 용역범위도 그때까지 수정 내지 보완된 기계설비 등 현장 설치분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3쪽 21행부터 14쪽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미지급 대금채권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기성부분 검사 및 지급기일 확인"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8회차 기성대금 565,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6,500,000원의 합계액인 621,500,000원(= 위 565,000,000원 + 위 56,500,000원)을 2016. 6. 말경 지급할 예정이고, 다만 기성대금 중 채권가압류(132,040,600원) 및 공과금 미납분(3,540,000원, '3,52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은 유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C 원주GMP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공사대금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2회차 기성대금 지급시 부당공제한 용역비(700,000원)와 전기료(327,140원) 합계 1,027,140원 및 8회차 기성대금 621,500,000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다만 가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된 132,040,600원은 법원에 공탁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3,179,912,260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바(이는 계약금액 3,938,000,000원에서 8회차 기성대금, 채권가압류 금액, 공과금 미납분, 용역비, 전기료를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 피고는 비록 그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그 확인 및 정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최후 공정인 T.A.B 공정 및 그에 따른 보완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8회차 기성대금을 2016. 6. 말경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중 공과금 미납분, 용역비 및 전기료의 경우 피고가 그 지급을 유보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채권가압류 금액의 경우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근거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758,087,740원(= 3,520,000원 + 132,040,600원 + 1,027,140원 + 621,500,000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제1심판결 1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감정인의 추가공사대금 산정결과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그 항목 자체를 넣지 않는 것으로, 즉 0%로 정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해당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의 약 109%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9쪽 상단의 표 아래 10행부터 20쪽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제8 내지 24, 28 내지 36, 39 내지 41, 48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제3의 공사업체들을 통해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 불완전하게 시공한 부분 등에 관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1,343,473,48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배관 및 덕트 스리브	18,246,623
2	I	리턴판넬타공, 천정타공 등	186,676,186
3	J	옥상 우레탄도막방수	18,559,598
4	K	훼손·오염 구간 무늬코트, 수성페인트, 에폭시코팅 보수	4,400,948
5	L	훼손·오염 구간 에폭시라이닝 보수	8,800,000
6	M	배기덕트, 공조덕트 설치	94,311,340

1	H	배관 및 덕트 스리브	18,246,623
7	N	덕트 제작·납품, 덕트 보완공사	300,470,000
8	O	덕트 및 배관 수정 등 기계설비 보완공사	363,000,000
9	P	공조기 폴리, 모터 교체 등	40,810,000
10	Q	압축공기제조시설 및 분배시스템 누기 보완	14,845,600
11	R	덕트 및 장비류 진단, 보완공사 후 재진단	92,730,000
12	S	덕트 및 장비류 진단	17,600,000
13	T	각종 센서류 재점검	35,073,192
14	U	전력간선 교체공사	2,750,000
15	V	정제수 시스템 프로그램 재설치	14,300,000
16	G	덕트 및 장비류 보완공사 후 재진단	4,950,000
17	W	공조기 모터, 인버터 교체 등	4,950,000
18	X	기계덕트 이설 등에 따른 추가 전기공사	121,000,000
합계	1,343,473,487		

3) 다만 피고가 제3의 공사업체들을 통해 시공한 공사들이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원고가 미시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시공하는 등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및 철수 이후 피고 또는 C의 보완공사 등 진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및 이행 경과,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사용승인 및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의 승인 경위,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및 철수 경위, 피고의 보완공사 등 진행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에 따른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국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에 따른 806,084,092원(= 1,343,473,487원 × 60%)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제1심판결 21, 22쪽 표 중 "항목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항목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니다.	[원고 주장 배척]① 정제수 EDI 전단에 설치된 유량계의 플로트스위치(float switch) 불량으로 정제수가 계속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여 전기가 공급됨으로써 EDI 내부가 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발주자)는 설비 가동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EDI 손상 부분을 교체하였는데, 위 설비의 특성상 유지, 관리 등 사용상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하자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	-------------------------------------	---

○ 제1심판결 22쪽 표 중 항목란 "2"를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2쪽 표 중 "항목 6" 부분을 삭제한다(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항목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당심에서 이 항목에 관한 하자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1심판결 23쪽 표 중 "기타 모든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보온재 두께를 13T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 배척]①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31호증의 23)에 의하더라도 C(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변경시공에 대하여 C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하자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4	설계변경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 배척]① 설계도면상 폐수배관은 STS 배관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된 상태는 PVC 배관으로 시공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하자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8,9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설계도면에 없던 것이므로, 이 항목들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 배척]① 보일러실이 작고 환기량이 적어 보일러실의 과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C(발주자)이 배기덕트 및 배기팬을 추가 설치한 점, ② 보일러용 응축수 탱크에서 발생한 증기가 실내에 퍼져 보일러실의 고온다습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C(발주자)이 후드 및 배기덕트를 설치한 점, ③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하자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들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10	원고가 아니라 C이 정한 장비업체가 시공하여야 할 내역이므로, 이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 배척]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코팅기 2, 3, 4호기의 스팀배관 연결공사 중 장비업체가 시공하여야 할 흡업(Hook Up)공사 이전 단계인 배관, 밸브, 트랩 등 설치하는 원고가 시공하여야 할 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코팅기의 스팀배관 등이 누락되어 C(발주자)이 시공한 점, ③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하자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13	공사내역서상 부하변동장치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 배척]①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집진기는 용도별로 구분하고 부하변동 가능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된 상태는 부하변동 가능한 인버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집진기 등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설계와 시공은 모두 원고의 책임 영역인 점, ③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하자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23쪽 표 아래 2, 3행의 "원고가 · 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272,819,490원(= 전체 감정금액 363,141,422원 - 항목 6 제외 금액 90,321,932원)이다."

○ 제1심판결 23쪽 아래에서 3행부터 1행까지의 "피고가 ...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인정 금액의 60%인 163,691,694원(= 272,819,490원 × 60%)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24쪽 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결국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163,691,694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제1심판결 2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최후 공정인 T.A.B 공정을 마친 2016. 6. 8. 또는 2016. 8. 1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T.A.B 공정을 수행한 무렵의 상황을 보면 덕트 사이즈 축소 시공으로 인한 풍량 부족, 일부 구간 장비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어 원고가 시공한 공조설비 등이 의약품제조시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원고가 T.A.B 공정을 수행 중이던 2016. 8.경에도 덕트 보완 작업 후 다시 T.A.B 공정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6. 9.경에는 C(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진단을 위해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2016. 7.경 이후에도 피고에 의한 보완공사가 계속되었으며, 그에 따라 T.A.B 공정도 다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4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을 통지하거나 준공검사를 요청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26쪽 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기성대금 또는 추가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7조 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의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무렵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8회차 기성대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급된 점, 추가공사대금의 경우 C(발주자)과 피고 사이의 정산

및 그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기성고와는 무관하게 모두 기성대금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일부 기성대금 또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지연되고 C(발주자)과의 추가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을 두고 정당한 공사 중지 또는 이행 거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지체일수에서 ① 현장 여건 미비로 인한 10일, ② 피고의 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5개월, ③ 선행공사인 피고의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2개월을 포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 또는 변경공사로 인하여 2016. 6.경까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및 이행 경과, 이 사건 제조소에 관한 사용승인 및 운전적격성 평가 결과보고서의 승인 경위,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및 철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피고의 건축공사 사이의 선후관계 및 예정공정의 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착공 지연, 공정관리 미흡, 덕트 공사 지연, 덕트 사이즈 축소 시공 등 원고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지체일수에서 공제되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27쪽 19행의 "0.003%"를 "0.003"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8쪽 12행부터 32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상계 및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637,283,102원(=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미지급 대금 74,800,000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 758,087,740원 + 추가공사대금 804,395,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2,913,178,786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806,084,092원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63,691,694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943,4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무렵인 2016. 7.경 상계적상에 있었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의 각 채권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상호 채권의 원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중 1,637,283,102원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75,895,684원(= 2,913,178,786원 - 1,637,283,1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23. 2. 9.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홍승면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